

1. 개정이유

한국인정기구(KOLAS)가 한국제품인정기구(KAS)를 흡수통합('22.4.8.)
함에 따라 시행규칙에 규정된 KAS관련 내용 삭제 및 정비 필요

2. 주요내용

성적서 위·변조 방지 기술 구축 대상 및 인정마크 사용 관련 내용 정비
(안 시행규칙 제2조제2항, 제11조제1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타부처 합의 전임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공인기관(인증 분야 공인기관은 제외한다)”을 “공인기관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단, 경영체제 및 자격인증 공인기관에 대해서는 기술적 조치의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.

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 각 호와”를 “별표 1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.

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분야별 공인기관 인정마크 도안

가. 인정마크는 제1호에 따른 인정기구 로고에 기관별 인정 분야 및 인정번호를 표시한다.

나. 기관별 인정 분야 및 인정 번호 표시 방법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.

별표 2를 삭제한다.

별지 제2호서식 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■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2호서식]

공인기관 인정신청서

[] 신규 [] 인정 분야 확대 [] 인정 분야 변경
[] 그 밖의 변경 [] 재평가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90일
------	-----	------	-----

구분	* 교정, 시험, 검사 등 해당하는 인정분야를 적습니다	
신청기관	기관명	대표자
	법인등록번호(또는 고유번호)	전화번호
	팩스번호	전자우편
	사업장 소재지 (우) * 사업장 소재지는 인정과 관련된 주요 활동이 있는 모든 소재지를 적습니다.	
신청목적	* 변경 신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습니다.	
신청분야	별첨	

「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·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·제8조제1항·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

첨부서류	1. 일반 현황 및 인력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. 고유번호증(법인인 경우는 제외합니다) 3.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인정 신청 분야 (사업장별로 신청 분야가 다른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인정 신청 분야를 적습니다) 4. 적합성평가 업무 추진체계의 국제기준 부합성, 적절성 및 효과성 등에 대한 자체 심사·검토자료 5. 적합성평가 업무의 품질 유지를 위한 문서 6. 그 밖에 국제표준에 따른 공인기관 인정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* 변경 신청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중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. * 모든 자료와 문서는 인정정보통합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[다만, 인정신청서 및 수수료(수입인지)는 별도 제출합니다]	수수료 뒤쪽 참조
------	---	--------------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수수료

1. 공인기관으로 인정 또는 재평가를 받으려는 경우

가. 신청 수수료: 50,000원

나. 서류평가 비용: 심사비용 × 3일. 다만, 기술문서 심사 시에는 5일로 합니다.

다. 현장평가 비용: 심사비용 × 평가 일수 × 평가자 수 + 출장여비

2. 공인기관으로 인정받은 분야를 확대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

가. 신청 수수료

1) 확대: 50,000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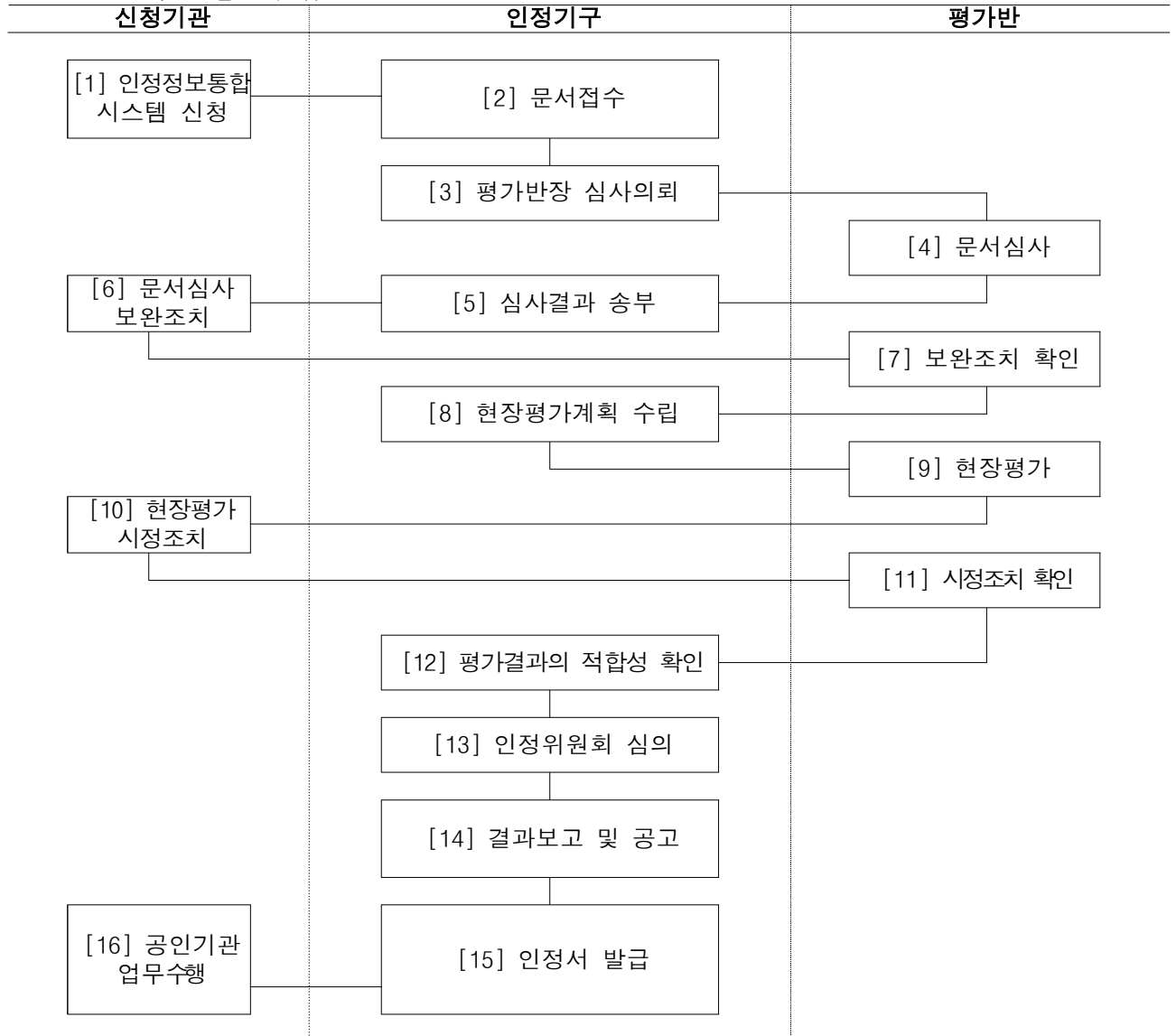
2) 변경: 20,000원

나. 서류평가 비용: 심사비용 × 1일. 다만, 「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서류평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평가 비용을 면제합니다.

다. 현장평가 비용: 심사비용 × 평가 일수 × 평가자 수 + 출장여비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■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3호서식]

공인기관 [] 변경사항 신고서 [] 인정서 재교부 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
		7일

구분		
	* 교정, 시험, 검사 등 해당하는 인정분야를 적습니다	
신고(신청) 기관	기관명	대표자
	법인등록번호(또는 고유번호)	전화번호
	팩스번호	전자우편
	사업장 소재지 () * 사업장 소재지는 인정과 관련된 주요 활동이 있는 모든 소재지를 적습니다.	
신고(신청) 사유		

「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7조제1항·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·신청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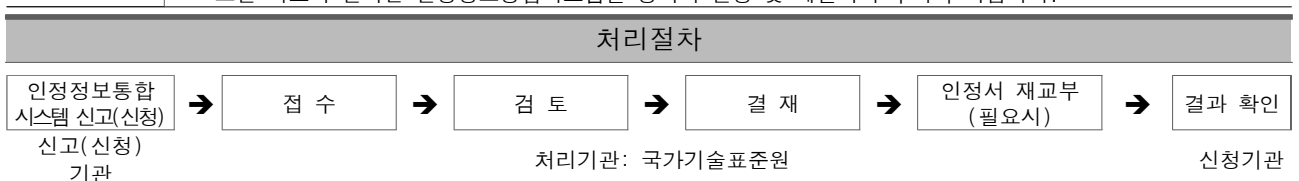
년 월 일

신고인(신청인)

(서명 또는 인)

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

첨부서류	1. 변경사항 신고의 경우: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. 공인기관 인정서 재교부 신청의 경우 가. 인정서(분실한 경우는 제외합니다) 나. 분실·훼손사유서 * 모든 자료와 문서는 인정정보통합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-----	--

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■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4호서식]

공인기관 휴업·폐업통지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제출인이 적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7일
구분	* 교정, 시험, 검사 등 해당하는 인정분야를 적습니다		
제출기관	기관명	대표자	
	법인등록번호(또는 고유번호)	전화번호	
	팩스번호	전자우편	
	사업장 소재지 (우) * 사업장 소재지는 인정과 관련된 주요 활동이 있는 모든 소재지를 적습니다.		
통지 내용 및 사유 휴업의 경우 그 기간			

「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제출인 (서명 또는 인)

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

첨부서류	없음	수수료	없음							
처리절차										
인정정보통합 시스템 제출	→	접 수	→	검 토	→	결 재	→	공 고	→	결과 확인
제출기관		처리기관: 국가기술표준원						제출기관		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